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시민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지도자 발굴 육성과 시민체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자원) 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특별회계(이하 '체육진흥기금'이라 한다)로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독지가의 체육성금 기탁금
2.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익금
3. 기타 성금
4.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자원

제4조(기금조성기관) 기금 조성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선수, 지도자 육성사업
2. 부산시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사업
3. 부산광역시체육회 사업, 예산의 보전
4. 부산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지원 사업
5. 기타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의 수반사업

②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사업

제6조(기금의 예탁) 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신탁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금액 및 발생이자에 한하여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영) 기금관리담당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지정하는 회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5조에 의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재가로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 시 보고토록 한다.

제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기금운영에 관한 보고는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회장에 게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연말결산 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정산) 기금의 정산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기금 사용즉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변제) ①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기금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이행케 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